

사업장의 안전직무교육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dustrial Safety Education and Training Regulation -

김 병 석
Kim, Byung-sek *
송 수 정
Song, Soo-Jeong **
강 경 식
Kang, Kyong-Sik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industrial safety education and training act based on comparing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ith facility safety act, construction safety regulation. The new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s proposed by deleting inefficient education and training regulation which is double checked act by different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1. 서 론

최근 우리 나라 경제는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업장 전반의 경제적 저비용, 고효율등에 따른 생산시스템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이 여러 원인 중 중요한 문제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장의 생산과 품질에 관련된 여러 안전 관련 법규의 중복 규제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의 정책은 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1953년에 발족한 근로기준법이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각종의 산업재해 증가로 기능인력 상실과 경제성장효과 잠식 등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됨에 따라 1981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실질적 의미로 최초의 제도로 만들었으나 사전적 예방조치와 정부차원의 종합조정기능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됨에 따라 1990년 재해예방에 관한 종합적 체계적으로 법이 개정되었다[1,3,4]. 그러나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의 기본이 되는 안전 보건관련 제도가 노동부외에도 통상산업부 등 10개 정부부처의 60여개 법령이 의해 중복 규제되고 있다[1,2]. 따라서 정부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도 및 관리 감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민간 경제주체의 생산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의 안전분야에 대한 자발적 투자를 위축케하고 기업자체가 수동적 자세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기업의 생산성 저하, 노사관계 악화, 국제경쟁력 약화 및 각종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처별로 중복 규제로 운용되고 있는 기존의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대상으로 안전직무교육제도의 중복 규제, 불일치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산업안전 법령 체계

* 충주산업대학교 산업안전공학과

** 명지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 명지대학교 산업공학과

를 갖추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각종 관련 법규의 정비를 통하여 법적용의 일관성, 단순성, 전문성을 추구하여 민간 경제 주체의 생산활동상의 편의 증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함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산업안전 관련 법령 중 중복 규제에 따른 상호 법령간의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기사업법,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을 선정하여 조사 비교하였고, 또한 관련 법령의 법정 안전직무교육 내용 중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법정교육시간, 법정교육내용, 법정교육주기, 법정교육시행기관, 벌금의 정도로 구분하여 조사 비교하였다[2,6,7].

3. 법정 안전직무교육제도의 연구분석

3.1 법정 안전직무교육제도의 문제점

(1)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기사업법,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은 법정 강제교육으로 되어있고 소방법, 승강기제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임의 교육으로 되어있다[7].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전기사업법은 의무고용자(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제도화시키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법정 안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이 받지 않는 경우가 의무고용수와 비교하여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6].

(2) 안전관리자의 직무내용이나 중요성이 개별법상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교육시간의 차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신규(34시간이상), 보수(24시간이상), 소방법은 24시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12시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3일 이내, 승강기제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7일 이내, 전기사업법은 20시간 이상, 소음진동규제법 및 대기 환경보전법은 14일 이내로 규정되었다[2,6,7]. 또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일정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안전법령간의 의무고용을 서로 호환성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안전교육내용이 각각 달리 정해져 있고 타법령상의 안전교육내용을 인정하거나 준용한 제도가 없어 타법상의 안전관리자가 해당 안전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구조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직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한다. 교육주기도 차이는 있으나 선임시 신규교육과 교육이수후 2 -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어 사업장내에서 한 사람이 여러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선임될 경우 계속 교육만 받아야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6,7]. 또한 안전법령별 교육주기에도 차이가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신규(선임된 후 3개월이내), 보수(2년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신규(종사시 1회), 연수(2년에 1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은 신규(종사시 1회), 연수(2년에 1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연수(2년에 1회이상), 전기사업법은 2년에 1회이상, 소음진동규제법은 3년에 1회이상, 대기환경보전법은 3년에 1회이상으로 되어 있었다[2,6,7]. 또한 개별안전교육은 공공, 민간전문기관에서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었다[6,7]. 산업안전교육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협회, 소방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고압가스안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교육은 한국가스 안전공사, 유해화학물질관리교육은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었다.

(3)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으면 관련 법에 의거 벌칙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 (승강기제조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실효성 확보에 미흡하고 벌칙내용이 있어도 정도의 차이가 과태료 50만원미만에서부터 500만원이하의 벌금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어 개별 법간의 실효성 확보에 차등이 발생한다[7].

3.2 개선방안

(1) 안전관리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가 법정 안전의무교육을 받는데 일차적 의무로 법제화되어 있으며 현행법에도 안전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교육을 받는데 일차적 의무로 부과한 사례도 있다. 또한 다음의 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 ① 소음진동규제법 (...기술요원 또는 환경 관리인을 고용한 자는 ...해당자에 대하여...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② 대기환경보전법 (...기술요원 또는 환경 관리인을 고용한 자는 ... 해당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③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독물 영업자 및 유독물 수입자는 유독물 관리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2) 서로 유사한 성격을 갖는 소방, 가스관련법, 환경관련법 등의 법령간의 안전교육시간은 통일화시키고 현장의 안전업무의 내용,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시간을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법의 교육내용을 안전관리 공통과목과 해당분야 전문교육과목으로 개편하여, 타법에 의거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가 공통과목을 이수하여 최소한의 안전지식을 얻도록 하며 어느 곳에서나 일정주기에 안전관리 공통과목을 이수하면, 타분야 교육 중 전문교육과목만 이수하도록 개선하고 개별 안전교육 전문기관끼리 교재, 강사 등을 서로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교육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등급별로 벌칙의 정도를 통일화하고 벌칙이 없는 법령에는 해당 법에서 부여한 안전교육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만큼 벌칙규정 필요하다.

4. 결 론

산업안전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기사업법,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별 법령들이 안전보건에 관한 세부적용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간 통일성과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어 안전관리의 체계적 종합적 해결능력이 부재하고 안전 관련 법령들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중복 내지는 유사 규제를 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규제완화 요구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으며 안전 관련 법령 상호간의 처벌기준 및 처벌내용이 차이가 있어 동일, 유사한 안전관리제도 위반에 대하여 안전관리 법령별로 각각 다르게 처벌규정을 하고 있다 [3,5]. 그러므로 사업장 스스로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사의 공동 노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현실적이고 내실이 있는 제도 정립을 함과 동시에 안전 관련 법령 글의 체계성, 동일성을 회복하고 법령 상호간 중복 및 불일치제거에 노력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법정 안전직무교육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들을 조사 비교 분석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무총리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안전관리 실태평가와 정책개선방향, 1995.
2. 국무총리실 중앙안전점검 통제단, 시설안전관리백서, 1995.
3. 김병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예방법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4. 김병진, 산업안전 보건법 개론, 노문사, 1994.
5. 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정책방향과 달라진 안전보건제도”, 노동부, 1992.
6. 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 조사 보고서, 유고문화사, 1994.
7. 노동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제도”, 노동부, 1996.

부록: 법정 안전 직무 교육 제도

구분	산업 안전 보건법	소방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해화학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도의 법적 성격	법정교육 (...받아야 한다)	내무부장관의 재량사항 (내무부장관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법정교육 (...받아야 한다)	법정교육 (...받아야 한다)	법정교육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관리자로하여야 함...반 개하여야 한다)
시 간	신규 : 34시간 이상 보수 : 24시간 이상	24시간	12시간		기간 : 3일 이내
내 용	신규 :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개론, 인간공학, 산업심리, 안전교육방법, 재해발생시응급처치, 안전점검, 평가 및 재해분석기법, 안전기준 및개인보호구등 각분야별 재해예방실무,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작업환경개선등 산업위생분야(위생보호구), 무재해운동추진기법 및실무 기타 안전관리자의 직무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수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전책,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평가, 실무,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추진실무,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분야별 재해및개선사례연구실무에 관한사항, 사업장안전개선기법, 기타 안전관리자의 직무향상을 위하여필요한 사항		규정없고 사업계획에 의거 실시	좌 등	좌 등
주 기	신규 : 선임된 후 3월이내 보수 : 2년 마다		신규 : 종사기1회 (매년3월말까지 수강신청) 연수 : 2년에 1회	신규 : 종사시1회 (매년3월말까지 수강신청) 연수 : 2년에 1회	연수 : 2년에 1회이상
시 행 기 관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비영리법인	한국소방 안전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유해화학물질 관리협회

<p>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주무장관의 명령)</p>		<p>교육을 받지않은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고용주에 대해 책임권고 또는 해임명령할 수 있다</p>			<p>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교육기관의 교육상황, 시설, 기타교육관계사항에 대해 지도할 수 있다</p>
<p>벌칙의 정도 (법정형)</p>	<p>500만원이하의 벌금</p>	<p>교육을 받지 않았을때의 벌칙규정은 없고 이로 인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해임명령 위반시에 100만원이하의 벌금</p>	<p>300만원이하의 벌금</p>	<p>300만원이하의 벌금</p>	<p>50만원이하의 벌금</p>

구분	승강기제조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진기사업법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제도의 법적성격	중소기업청장의 재량사항 (중소기업청은...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법정교육 (...받아야 한다)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자는..해당자에 대하여...교육을 받게하여야 한다. 특징 : 교육대상자가 아닌 고용주에게 의무 부과	법정교육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자는...해당자에 대하여...교육을 받게하여야 한다. 특징 : 교육대상자가 아닌 고용주에게 의무 부과
시 간	7일이내	20시간이상	14일 이내	14일 이내
내 용	<교육내용> 승강기관계법명해설, 승강기기계설비실무, 승강기전기설비실무, 승강기점사실무, 승강기관리방법, 승강기안전에 관한 사항 <교육과목>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음	지정받은 단체 (또는기관)가 교육과목, 시간,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본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방지사설기술요원과정 측정기술요원과정 환경관리인과정	방지사설기술요원과정 측정기술요원과정 환경관리인과정
주 기		2년에 1회이상	3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시 행 기 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기관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한국전기기사협회)	환경공무원교육원, 환경모전협회, 기타 환경부장관이 교육능력을 인정하여 지정한 기관	환경공무원교육원, 환경모전협회, 기타 환경부장관이 교육능력을 인정하여 지정한 기관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주무장관의 명령)	규정없음	규정없음	환경부장관은 필요한경우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수있고 교육기관의 교육상황, 시설, 기타 교육 관계 사항에 대해 지도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필요한경우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수있고 교육기관의 교육상황, 시설, 기타 교육 관계 사항에 대해 지도할 수 있다
벌칙의 정도 (법종형)	없음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해임해야하며 해임하지 않았을 경우 30만원이하의 벌금	교육을 받게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 50만원이하의 과태료	교육을 받게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 50만원이하의 과태료